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0,180,151	14,105,405
일반회계	455,407,704	13,662,231
특별회계	14,772,447	443,173
기타특별회계	14,772,447	443,1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68,190	104,04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656	2,870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486,714	14,601
의료급여특별회계	1,118,913	33,5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자활기금특별회계	1,788,549	53,656
주택사업특별회계	24,302	729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36,218	7,087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744,330	172,330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736,275	52,088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30,000	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